

【 2025년도 환경부 소관 】

제 1 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 검 토 보 고 서

〈 환경 부 소 관 〉

【 추 가 경 정 예 산 안 】

일 반 회 계
환 경 개 선 특 별 회 계
지 역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2025. 4.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목 차 】

【 환경부 소관 】

I.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1.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 및 기본방향	1
2.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	2
3.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4
가. 총괄	4
나. 세입	4
다. 세출	5
II. 검토의견	10
1. 환경개선특별회계	10
(1) 국립공원공단출연(1831-306)	10
가.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10
나. 헬기도입사업: 적기 사업 완료를 위한 사업 관리 철저	11
다. 고성능산불진화차량확충: 적기 도입·배치를 위한 사업관리 철저 ..	14
(2) 재해대책비(7140-300)	18
가.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18
나.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 집행 관리 철저	19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6
(1) 하수관로정비(1132-312)	26
가.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26
나.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조속한 사업 집행 및 명확한 보조율 근거 마련 필요	27

【 환경부 소관 】

I.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 및 기본 방향

정부는 산불대응 및 통상·AI 지원 등을 위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추경 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선별하여 총 12.2조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규모는 재난·대응 3.2조원,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 4.4조원, 민생 지원 4.3조원, 기타(국채이자, 주요행사 개최 등) 0.2조원임.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최근 영남지역의 대형산불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정부의 재해·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둘째, 전례 없는 관세 충격으로 우리 산업·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관세 피해·수출기업의 부담 경감과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할 계획임.

셋째, 내수 회복 지연으로 서민·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임.

2.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일반지출 12.2조원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금번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1.4조원을 지원하고, AI 감사카메라·드론, 헬기·진화차량 도입 등 정부의 재해·재난 예방·대응력 강화를 위해 1.7조원을 편성하였으며, 공항시설의 안전시설 보강과 싱크홀(지반침하 또는 땅꺼짐)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후하수관로·도로의 조기 개보수에 0.2조원을 지원할 계획임.

둘째, 기업들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한 관세 피해 관련 정책 금융과 수출바우처 확대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2.1조원을 지원하고, 고성능 GUP 1만장 확보, 고급인재 양성 2배 확대 등 AI 생태계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1.8조원, 또한 반도체 등 첨단전략사업 분야 필수 인프라 및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0.5조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셋째,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50만원 크레딧 지원과 정책자금을 확충하는 등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에 2.6조원을 지원하고, 전통시장·골목상권 등의 매출 신장을 위해 ‘상생페이백’ 신설 등 영세사업자 매출기반 확충에 1.6조원, 저소득 근로자와 최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정책자금 확대를 위한 취약계층 생활안전 지원에 0.2조원을 지원할 계획임.

【 참고자료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

기본 방향	총 12.2조원	
	◇ 우리경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①재해·재난 대응, ②통상·AI 대응, ③민생 지원 등 3대 분야 집중 투자	
주 요 내 용	① 재해·재난 대응	+3.2조원*
	▶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	1.4조원
	▶ 재해·재난 예방·대응력 강화	1.7조원
	▶ 노후 SOC 개량 등 안전투자	0.2조원
	② 통상 및 AI지원	+4.4조원*
	▶ 통상리스크 대응(관세, 공급망, 고용불안)	2.1조원
	▶ AI 생태계 혁신	1.8조원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0.5조원
	③ 민생 지원	+4.3조원*
	▶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2.6조원
	▶ 영세·중소 사업자 매출기반 확대	1.6조원
	▶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0.2조원
	④ 기타(국채이자, 주요행사 개최 등)	+0.2조원

* 억원 단위로 산출한 규모(표에서 제시된 하부 카테고리(천억원 단위) 합과 일부 차이)

3.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가. 총괄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1회 세입 추경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753억원 증액된 7조 5,22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 추경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753억원(1.4%) 증액된 13조 1,592억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총수입-총지출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도 예산		증 감 (B-A)	%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안(B)		
☐ 세입	70,476	70,476	73,468	75,221	1,753	2.4
☐ 세출	125,060	125,060	129,839	131,592	1,753	1.4

자료 : 환경부

나. 세입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1회 세입 추경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753억원 증액된 7조 5,221억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1회 세입 추경예산안(회계별)]

(단위 : 억원)

구 분	'24예산		'25예산		증 감 (B-A)	%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합 계	70,476	70,476	73,468	75,221	1,753	2.4
▪ 자체세입	13,410	13,410	13,158	13,158	-	-
◦ 재산수입	492	492	459	459	-	-
◦ 경상이전수입	10,540	10,540	9,896	9,896	-	-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43	43	23	23	-	-
◦ 수입대체경비수입	17	17	12	12	-	-
◦ 관유물매각대	7	7	130	130	-	-
◦ 융자원금회수	2,311	2,311	2,638	2,638	-	-
▪ 세계잉여금 이입액	409	409	483	483	-	-
▪ 일반회계 전입금	56,657	56,657	59,827	61,580*	1,753	2.9

* (일반회계 전입금) 법정전입금(3조 4,741억원)** + 추가 전입금(2조 6,839억원)

** (법정전입금) 교통·에너지·환경세(15조 1,048억원) × 23%

자료 : 환경부

다. 세출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12조 9,839억원 대비 1,753억원(1.4%) 증가한 13조 1,592억원으로 편성되었음.

(1) 회계별 현황

회계별로 살펴보면, 환경개선특별회계는 2025년도 본예산 4조 8,994억원 대비 1,197억원(2.4%) 증가한 5조 19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역균형발전회계는 2025년 본예산 2조 5,967억원 대비 556억원(2.1%) 증가한 2조 6,523억원으로 편성되었음. 일반회계 및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음.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회계별)]

(단위 : 억원)

구 분	'24년 예산		'25년 예산		증 감 (B-A)	%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추경안 (B)		
합 계	125,060	125,060	129,839	131,592	1,753	1.4
◦ 일반회계	22,091	22,091	22,047	22,047	-	-
◦ 환경개선특별회계	52,945	52,945	48,994	50,191	1,197	2.4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0,670	30,670	32,007	32,007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8,974	18,974	25,967	26,523	556	2.1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80	380	824	824	-	-

자료 : 환경부

(2) 부문별 현황

부문별로 살펴보면, 물환경 부문 556억원, 자연환경 부문 77억원, 환경일반 부문 1,120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외 부문에선 변동사항 없음.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부문별)]

(단위 : 억원)

구 분	'24년 예산		'25년 예산		증 감 (B-A)	%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추경안 (B)		
합 계	125,060	125,060	129,839	131,592	1,753	1.4
◦ 물환경	38,824	38,824	42,148	42,704	556	1.3
◦ 수자원	21,995	21,995	21,878	21,878	-	-
◦ 자원순환및환경경제	10,537	10,537	11,986	11,986	-	-
◦ 기후대기및환경안전	39,950	39,950	40,321	40,321	-	-
◦ 자연환경	8,360	8,360	7,883	7,960	77	1.0
◦ 환경일반	5,298	5,298	5,454	6,574	1,120	20.5
◦ 물류등기타	96	96	169	-	-	-

자료 : 환경부

(3) 세부사업별 현황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3개 세부사업인 하수관로정비, 국립공원공단 출연, 재해대책비 사업에서 총 1,753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사업비 증액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싱크홀(지반침하 또는 땅꺼짐) 피해 예방을 위해 싱크홀(지반침하 또는 땅꺼짐)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필요한 556억원을 하수관로정비사업에서 증액하였으며, 국립공원의 산불 초동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유사시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노후 헬기 교체와 고성능 산불진화 차량 추가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위해 국립공원공단 출연 사업에서 77억원을 증액하였음.

마지막으로 금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남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와 지역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재해대책비 사업에서 폐기물 처리비용 1,120억원을 증액하였음.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세부사업별)]

(단위 : 억원)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2024년		2025년		증감 (B-A)	%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추경안 (B)		
합 계		15,611	15,611	18,991	20,744	1,753	9.2
하수관로 정비	▪ 싱크홀, 하수범람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하수관로 정비, 저류시설 설치 등 하수도 인프라 확충	12,816	12,816	16,264	16,820	556	3.4
국립공원 공단출연	▪ 국립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립공원공단 기관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수지차 출연	2,295	2,295	2,227	2,304	77	3.4
재해 대책비	▪ 자연재해 피해 지역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 등 재해대책비 지원	500	500	500	1,620	1,120	224.0

자료 : 환경부

II. 검토의견

1. 환경개선특별회계

(1) 국립공원공단출연(1831-306)

가.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국립공원공단출연’(1998~, 출연) 사업은 국립공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립공원 환경관리 및 공원관리장비운영 등 공원 운영비, 동·식물 서식 현황 조사 등 공원자원관리, 대국민 편의시설 등 탐방시설운영 및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도 본예산에는 2,227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303억 7,800만원이 편성되어 본예산보다 76억 5,000만원(3.4%)이 증액됨.

[2025년도 국립공원공단출연 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제1회 추경 (B)		
□ 국립공원공단출연	229,518	229,518	222,728	230,378	7,650	3.4
▪ 헬기도입	2,500	2,500	500	7,400	6,900	1,380
▪ 고성능산불진화차량 확충	1,516	1,516	-	750	750	순증

나. 헬기도입사업: 적기 사업 완료를 위한 사업 관리 철저

국립공원공단출연 사업의 내역사업인 ‘헬기도입’사업은 대규모 산불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노후헬기 교체를 추진하는 사업임.

이번 추경안에서 증액 편성한 예산은 '24년부터 사업출연금으로 추진되어온 기존 ‘공원관리헬기 도입’ 사업에 대한 증액분 69억원으로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음.

[헬기도입 사업 추경안 산출 내역]

○ 공원관리헬기 도입(교체)를 위한 증액 편성 1대 × 6,900백만원 = 6,900백만원

자료: 국립공원공단

공원관리헬기 도입사업은 '97년 도입되어 노후화된 기존 헬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전체 사업비 250억원(사업출연금)을 기반으로 추진되던 사업으로, '24년 예산에 이 중 25억원을 반영하여 조달청을 통해 2차례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미응찰로 유찰된 바 있음.

[교체 대상인 노후헬기 정보]

도입연도	기종명	제조사	구매비용	주용도	헬기기령	노후화율*
1997	KA-32T	카모프	2,982백만원 (러시아경협차관)	산불진화 공중순찰 등	28년	74.3%

*최대 운항 가능 시간(6,000시간) 대비 4,460시간(74.3%) 운항

자료: 국립공원공단

[2024년 노후헬기 교체사업 진행 경과]

- '24. 2월~4월 : 국립공원 헬기 제작·구매 계획(안) 수립
- '24. 4. 29.~30. : 사업설명회 개최
- '24. 5월~7월 : 규격심의회 개최 및 헬기 규격 확정
- '24. 8. 5.~16. : 조달청 긴급공고 협의 및 계약의뢰
- '24. 8. 21. ~ 10. 8. : 사전규격공고 및 긴급공고(총 250억원)
- '24. 10. 8. : 1회 유찰 (제작사측에서 제작단가를 이유로 미응찰)
- '24. 10. 10. ~ 10. 22. : 재공고 입찰
- '24. 10. 22. : 2회 유찰 (미응찰)

자료: 국립공원공단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전체 사업비를 330억원으로 증액하고, '25년에는 본예산에 편성된 5억원과 '24년에서 이월된 25억원 및 이번 추경안을 통하여 확보된 69억원을 합한 총 99억원으로 실효성있는 구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함.

[노후 헬기 교체사업 연도별 사업비(안)]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합계
연도별 사업비	25 74	99	132	330

*'25년의 25억원은 24년도 이월액, 5억원은 본예산 편성액, 69억원은 추경액(안)임

자료: 국립공원공단

한편,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의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그 편성 필요성이 인정되면, 목적적합성, 시급성, 예측불가능성 등 일정한 요건¹⁾을 갖추어야

하는데,

동 사업의 경우, ① 본예산 편성 이후 '25년 지리산·주왕산 국립공원을 포함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였고²⁾, ② 본예산 편성액으로는 적기에 헬기 구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③ 기후변화로 산불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헬기도입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다만,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24년 사업추진과정에서 조달청 공고 및 재공고에도 유찰된 전례가 있는 점과 산불 대응체계 구축의 시급성 및 헬기도입사업의 전체 사업 기간이 약 3년 이상으로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할 때³⁾, 신규 헬기의 적시성 있는 도입을 위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 추경안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① 추경 집행을 통해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어야 하고(목적적합성), ②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여야 하며(예측불가능성), ③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어야 할 것임(시급성).

2)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공단 소속 헬기를 통해 '25년 산불 당시 총 334회의 담수를 통해 835,000L의 물을 투하 하였음.

지 역	비행일자	비행시간	담수횟수	물 투하량
	계	52시간25분	334회	835,000 ℓ
산청(지리산)	3.22.(토)-3.25.(화), 3.28.(목)-3.30.(일)	44:45	281회	702,500 ℓ
주왕산	3.26.(수)-3.27.(목)	07:40	53회	132,500 ℓ

3) 산림청과 국립공원공단의 2024년 헬기 구입 입찰공고(나라장터)에 따르면 두 기관 모두 납품기한을 계약 후 1,080일 이내로 공고하고 있음.

둘째, 출연금은 보조금 사업 등과 달리 사용에 있어 재량이 부여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헬기도입 사업의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 등 잔액이 발생할 경우⁴⁾ 향후 편성될 2년차 또는 3년차의 출연금 편성액을 조정하여 이번 추경편성 금액이 편성목적⁵⁾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향후 환경부는 헬기도입 사업 전과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경 목적에 맞는 적시성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다. 고성능산불진화차량확충: 적기 도입·배치를 위한 사업관리 철저

국립공원공단출연 사업의 내역사업인 ‘고성능산불진화차량 확충’ 사업은 대규모 산불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신규 고성능산불진화차량 도입을 추진하는 사업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증액 편성한 예산은 총 2대의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을 추가로 도입하기 위한 7억 5,000만원으로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음.

4) 참고로 산림청에서는 '24년 말 사업예산 329억원으로 중형급 신규헬기 도입사업을 공고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와 32,727,990천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

5)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재해·재난 대응’ 중 ‘재해·재난 예방·대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자료: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보도자료, '25.4.18., 기획재정부)

[고성능산불진화차량 확충 사업 추경안 산출내역]

○ 고성능산불진화차량 2대 × 375백만원 = 750백만원

자료: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고성능산불진화차량은 일반 산불진화차량의 담수 용량인 800L의 2.5배인 2,000L의 담수용량을 가진 산악지형에 적합한 고성능 산불진화 장비로, 국립공원공단은 '23년과 '24년 도입 사업을 통해 총 4대를 구입·운영 중임⁶⁾.

[도입예정인 고성능산불진화차량과 일반산불진화차량 주요 제원 비교⁷⁾]

구 분		고성능 산불진화차	일반 산불진화차
사 진			
새시(모델)		기아 K-351C(군용 소형전술차량)	현대 포터 등(1.0ton)
승차인원		4인승	3인승
제 원	크 기	6,400mm×2,195mm(폭)×2,690mm(높이)	5,100mm×1,740mm(폭)×1,970mm(높이)
	차체 중량	7,000kg(적재: 2.9t)	3,425kg(적재: 1t)
	최저지상고	410mm	150mm
	구동방식	4WD	4WD
	물탱크용량	2,000 ℓ	800 ℓ
	타이어	395/85R20	195/70R15
	방수량	200L/min	280L/min(최대 발사거리: 30m)
특 징		직접진화(자동방수) 및 급수지원 용이	진화호스를 이용한 진화

자료: 국립공원공단

6) 다만, 기존 사업을 통하여 도입된 고성능산불진화차량은 1대당 7억 5,800만원이 소요된 대형 수입기반 차량으로, 이번 추경안을 통하여 도입하려는 중형 고성능산불진화차량과는 상세 제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

7) 참고로 기존에 도입된 고성능산불진화차량은 벤츠 유니목(u5023)으로, 6,650mm×2,480mm(폭)×3,300mm(높이)(크기), 차체중량 15,000kg, 물탱크용량 4,000L, 방수량 2,800L/min(최대 발사거리: 70m)의 제원임.

[고성능산불진화차량 도입 · 배치 현황]

도입연도	도입차량	배치현황	배치연도	운영인력
2023	2대	경주 국립공원 오대산 국립공원	2024	경주 6명 오대산 6명
2024	2대	설악산 국립공원 무등산 국립공원	2025	설악산 5명 무등산 7명

자료: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은 해당 차량도입을 통해 산악지형이 많은 국립공원(전체 국립공원 면적의 60%)에서의 신속한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고성능산불진화차량 사업추진계획(안): 2025년]

- '25. 5월 : 2025년 고성능(중형) 산불진화차량 도입 계획(안) 수립
- '25. 6월 : 입찰공고 의뢰(→조달청)
- '25. 6월 ~ 8월: 사전규격공개 및 입찰 공고
- '25. 8월 : 개찰
- '25. 9월 : 제안서 평가
- '25. 9월 : 물품계약 체결
- '25. 9월 : 선금급 청구 및 지급(70%)
- '25. 12.월 : 납품 완료

자료: 국립공원공단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의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그 편성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목적적합성, 시급성, 예측불가능성 등 일정한 요건⁸⁾을 갖추어야 하는데,

8) 추경안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① 추경 집행을 통해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어야 하고(목적적합성), ②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

동 사업의 경우, ① 본예산 편성 이후 '25년 지리산·주왕산 국립공원을 포함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였고, ② 본예산 편성액에는 관련 비용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고성능산불진화차량을 배치·운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③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특성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대응체계 구축의 시급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고성능산불진화차량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다만, 기존 고성능산불진화차량 납품과정에서 유찰 및 납기일정 지연이 발생한 바 있으므로⁹⁾, 추가로 도입되는 차량의 적기 구입 및 배치를 위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산불진화차량 증차와 함께 화재현장への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임도(林道), 탐방로 등 관리기반시설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¹⁰⁾

따라서 향후 환경부는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확충사업 전과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해당 차량이 적기에 구입 및 배치·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측하지 못한 사유여야 하며(예측불가능성), ③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어야 할 것임(시급성).

9) 2024년 고성능산불진화차량 도입사업에서는 단일유찰에 따른 유찰이 1회 발생하였으며, 전쟁으로 인한 국방물자 수급증가로 인한 차체 생산 및 운송지연으로 납품기한 변경이 있었음(증 38일).

10) 참고로 산불진화임도는 산불 위험이 높은 산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보호 및 산불진화를 목적으로 산불대응에 특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하는 임도이며, 임도에 대해서는 산불진화 자원이 투입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산불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과 임도가 바람 세기를 강하게 한다는 등의 의견이 각각 있음.

(2) 재해대책비(7140-300)

가.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재해대책비’(2024년~, 보조율 50~100%¹¹⁾) 사업은 재난 발생에 따른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환경기초시설(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복구비용, 국립공원 복구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2025년 예산에 재난 발생시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350억원, 환경기초시설 복구비용 100억원¹²⁾, 국립공원 재해복구비용 50억원¹³⁾ 등 총 500억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500억원 대비 1,120억원(224%) 증액된 1,620억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재해대책비 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제1회 추경(B)		
☐ 재해대책비	50,000	50,000	50,000	162,000	112,000	224

11) 재난폐기물 처리 및 국립공원의 경우 100%,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50~100%로 보조율이 상이함.

12) 환경부는 영덕매립장 및 청송매립장 등 폐기물 매립시설 복구비 예산으로 28억 4,8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임.

13) 환경부는 국립공원 공원시설 피해복구(29억 5,000만원), 응급복구(16억원), 산불 피해조사(4억 5,000만원) 등 50억원을 집행할 계획임.

나.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 집행 관리 철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 편성된 재해대책비는 2025년 3월 울산 및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¹⁴⁾로 인해 주택 4,232동, 농업시설 2,556동¹⁵⁾, 산림은 104,000ha가 소실¹⁶⁾되는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 및 농업시설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 1,1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2025년도 재해대책비 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3년 결산	'24년 본예산 (A)	'25년				
			본예산 (B)	추경(안) (C)	최종 (D=B+C)	증감 (D-A)	%
□ 재해대책비	-	50,000	50,000	112,000	162,000	112,000	224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 (자치단체경상보조)	-	35,000	35,000	112,000	147,000	112,000	320
*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환경기초시설 복구비용 (자치단체자본보조)	-	10,000	10,000	-	10,000	-	-
국립공원공단 재해복구비 (법정민간대행사업)	-	5,000	5,000	-	5,000	-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¹⁷⁾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14) 2025년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울산,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31명이 사망하고, 5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음.

15) 2025년 4월 7일 기준 피해현황(행정안전부)

16) 산림청 보도자료(2025.4.18.),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 규모 잠정 104천ha, 산림청 복구에 최선'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 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재난

관한 규정」별표¹⁸⁾ 등에 따라 오염물 및 잔해물의 방제 및 처리 비용을 국고 100%로 보조할 수 있음.

이번 산불로 인한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 규모를 살펴보면 주택 및 농업시설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은 안동 434억 7,600만원, 영덕 419억 100만원, 청송 388억 5,300만원 등 총 1,400억원 규모이고, 여기에 공장 등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50억원¹⁹⁾을 더하여 총 폐기물 처리 재해복구비 규모는 1,450억원으로 추정²⁰⁾됨.

[주택 · 농업시설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안)]

(단위: 톤, 원)

지 역	합 계		건설폐기물		혼합폐기물		슬레이트		기 타	
	발생량	처리비 (백만원)	발생량	단가	발생량	단가	발생량	단가	발생량	단가
합 계	1,551,790	140,000	1,406,556	-	129,266	-	4,766.5	-	11,201	
안동시	482,024	43,476	435,000	75,150	43,954	206,727	1,959	645,000	1,111	392,000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18) [별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

다. 오염물 및 잔해물 처리 및 방제비용	환경부, 해양수산부	실시 비용	국고 100%	(1) 실시비용은 인건비, 자재대, 경비 및 그 밖의 비용을 포함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한정한다.
------------------------	------------	-------	---------	---

19)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에는 공장 재난폐기물 관련 사항은 현재 입력되어 있지 않으나, 경상북도에서 추산한 물량을 토대로 관련 협회 등의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임.

- (피해현황) 경북도 자체 조사결과 65개* 업체가 피해
 - * 중앙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기업 수 및 물량은 변동될 수 있음
- (폐기물 발생량) 약 53,665톤
 - * 건설폐기물 48,665톤, 사업장폐기물 5,000톤
- (처리비) 5,000백만원
 - * 건설폐기물 3,640백만원(48,665톤 × [처리비 52,822원/톤 + 운반비 21,872원/톤])
 - * 사업장폐기물 1,360백만원(5,000톤 × [처리비 250,000원/톤 + 운반비 21,872원/톤])

자료: 환경부

20) 정확한 재해복구비 규모는 4월 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임.

영덕군	473,656	41,901	429,566	75,150	42,938	206,727	1,152	645,000	-	392,000
영양군	30,497	3,528	26,613	76,350	568	280,954	144	645,000	3,172	392,000
의성군	114,430	11,558	95,483	75,150	17,320	206,727	647	645,000	980	392,000
청송군	444,752	38,853	414,650	75,150	23,323	206,727	841	645,000	5,938	392,000
산청군	5,255	517	4,371	75,150	871	207,098	13	645,000	-	-
하동군	38	8	-	-	37	207,098	0.5	645,000	-	-
울주군	1,138	159	873	75,150	255	330,000	10	950,000	-	-

주)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 집계 자료(4.1~4.15)를 바탕으로 작성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기존 예산 및 이전용을 통해 330억원을 확보²¹⁾하고, 추가
경정예산안을 통해 1,12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산불로 인한 재난폐기
물을 처리할 계획임.

[재해대책비 추가경정예산안 산출 내역]

폐기물처리 재해대책비	재원마련 방안
○ 주택 농업시설 재난 폐기물 처리비용 1,400억원 ○ 공장 등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50억원	○ 추가경정예산안 1,120억원 ○ 기정예산 및 이전용 등 330억원

자료: 환경부

21) 환경부는 재해대책비 잔액 중 일부를 활용(자치단체자본보조(330-03)를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로 세목조정한 45억원과 집행잔액 185억원 등)하여 230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100억원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50억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 총 100억원을 이용하여 재원을 확보할 계획임.

[재해대책비 기정 예산 확보 방안]

(단위 : 백만원, '25.3.31.기준)

세부사업	목-세목	25년 예산	집행액	집행잔액	활용내역
재해대책비 (7140-300)	소 계	50,000	16,490	33,510	23,000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5,000	-	5,000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35,000	16,451	18,549	18,500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10,000	39	9,961	4,500*

주)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를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로 세목조정하여 활용 예정

자료: 환경부

또한 환경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4월 9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²²⁾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된 복구계획안(4월 말)을 바탕으로 5월 중 예산 이·전용 등을 마무리하고 6월 중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²³⁾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복구계획 수립 및 예산 교부 일정(안)]

<복구계획 수립절차>	<추진 일정>
재난 발생	3월 21일
↓	
재난 대응 (산불 진화 등)	3월 21 ~ 30일
↓	
상황 종료	3월 30일
↓	
지방재난피해조사(지자체)	4월 1 ~ 8일 (NDMS 입력)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행안부·지방청·지자체)	4월 9 ~ 15일 (재해대장 작성 및 NDMS에 등록)
↓	
복구계획(안) 작성(행안부)	4월 20일(잠정)
↓	
재정당국 및 관계부처 협의 (행안부)	4월 20일 ~ 1·2주 소요(잠정)
↓	
복구계획 확정(중대본)	4월말경(잠정)
↓	
예산 편성(이·전용 등)(관계부처)	5월중(잠정)
↓	
예산 교부(지방청→지자체)	6월중(잠정)

자료: 환경부

22) 재난폐기물의 과다 산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불 관련 재난폐기물 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였으며, 중앙합동조사단 조사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설명함. 동 가이드라인에는 건축물 구분에 따른 폐기물 종류 및 발생량 기준을 제시하고 고철 등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며 건설폐기물 처리단가 산출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음.

23) 지방자치단체별(안동 50억원, 의성 120억원, 청송 50억원, 영양 44억원, 산청 4.3억원, 울주 1.3억원, 영덕 추경 준비 중)로 4월 중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4월 말까지 운반·처리업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5월 초까지 작업에 착수할 계획임.

이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제89조²⁴⁾에 따라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으므로, 추가경정편성의 일반 요건인 목적 적합성²⁵⁾, 예측불가능성²⁶⁾, 보충성²⁷⁾, 시급성²⁸⁾, 연내 집행가능성, 산불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및 방치 시 환경에 악영향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폐기물 재해대책비를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은 해당 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 사업은 2024년 예산현액 358억 2,500만원 중 37.8%인 132억 2,000만원만 집행되었고 218억 4,200만원이 불용²⁹⁾되었으며, 각 회계연도 말 기준 실집행률은 2022년 42.3%, 2023년 34%, 2024년 42.4%로 나타나는 등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한 상황임.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 예산이 부족하여 국비가 교부된 이후에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체결을 진행하는 등 절차가 지연되면서 실집행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함.

24)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25) 법률상 명시된 사유에 부합할 것

26) 기존 본예산 편성 및 심의 시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

27) 기존 예산의 전용, 예비비 등으로 대체가 곤란할 것

28) 다음 본예산 편성 및 확정까지 기다리기 곤란할 것

29) 환경부는 2024년 재해대책비 예산이 불용된 이유에 대해, 해당 예산이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된 것으로서, 2024년에는 수해 복구를 위한 130억 원 외에 큰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함.

[최근 4년간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실집행률]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1	-	-	2,426	-	2,426	2,426 [1,157]	-	100.0 [47.7]	-	-
2022	-	-	37,546	6,081	43,627	39,600 [18,449]	-	90.8 [42.3]	4,027	-
2023	-	4,027	44,670	-	48,697	46,842 [16,540]	-	96.2 [34.0]	-	1,855
2024	35,000	-	825	-	35,825	13,220 [15,194]	37.8	37.8 [42.4]	763	21,842
2025.3.	35,000	763	-	-	35,763	16,451 [1,377]	47.0	46.0 [3.9]		

주1) 각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집행실적을 계산하고, 실집행액에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작성함

주2) 2025년에는 폭설피해로 인한 육상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도, 충청북도 등에 164억 5,1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음.

자료: 환경부

이처럼 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보조사업 계획, 집행 및 정산 전 과정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폐기물처리 재해 복구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① 지자체가 준비 중인 계약 과업지시서·견적서 등을 한국환경공단³⁰⁾ 등이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계약 단가 및 물량의 적정성 여부를 상세히 검토함으로써 예산의 과다 산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② 집행단계에서는 유역·지방환경청의 현장지원반이 지자체와 합동으로 폐기물 수거·운반·처리 현장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③ 정산시에도 준공 증빙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미집행 잔액을 즉각 반

30) 한국환경공단은 재난폐기물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110명의 집계크레인차량 보유사업자와 협력해 산불 피해지역에 폐기물 수거장비를 투입하는 체계를 갖추었고, 공단의 가용 인력과 예산을 신속히 투입해 현장 복구작업을 지원하고 있음.

납조치³¹⁾하도록 하는 등 보조사업 준비·집행·정산 단계별 감독을 강화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향후 환경부는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 사업의 계약단계부터 사업집행 및 정산 전과정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1) 이를 위해서는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을 통해 예산 집행 및 정산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하수관로정비(1132-312)

가.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하수관로정비’(1992년~, 지자체 자본보조) 사업은 하수의 완벽한 배수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보건·위생 확보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하수의 유출·누출을 방지하여 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과 하천 수질을 개선하며, 하수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하수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시침수에 대응하는 사업임.

내역사업은 ‘도시침수대응’, ‘하수관로정비’,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대심도하수저류시설’의 네 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하수관로정비’ 내역사업의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은 2025년 본예산 1조 2,950억 6,700만원 대비 556억 4,400만원(4.3%) 증액된 1조 3,507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하수관로정비 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제1회 추경(B)		
□ 하수관로정비	1,281,593	1,281,593	1,626,418	1,682,062	55,644	3.4
▪ 하수관로정비	935,943	935,943	1,295,067	1,350,711	55,644	4.3

나.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조속한 사업 집행 및 명확한 보조율 근거 마련 필요

최근 전국적으로 다수의 싱크홀(지반침하 또는 땅꺼짐)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노후 하수관로의 조속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노후 하수관로정비 계속사업 148개소 중 38개소를 선정하여 추가 505억원, 신규사업으로 서울 지역의 27개소에 대한 예산 51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음.

참고로, 2025년도 본예산 기준, 전체 하수관로정비 사업 예산은 1조 2,951억원(① 계속사업 493개소 1조 2,664억원, ② 신규사업 62개소 287억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2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정비’ 사업 예산은 2,596억원(① 계속사업 132개소 2,528억원, ② 신규사업 16개소 68억원)임.

[2025년도 하수관로정비사업 본예산]

구분	전체		노후하수관로	
	개소	편성액	개소	편성액
계속사업	493개소	1조 2,664억원	132개소 (26.8%)	2,528억원 (20.0%)
신규사업	62개소	287억원	16개소 (25.8%)	68억원 (23.7%)
계	555개소	1조 2,951억원	148개소 (26.7%)	2,596억원 (20.0%)

추경예산 편성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8개소의 계속사업 지역은 2025년도 본예산에 연부율상 필요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지역 중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고, 서울시에 편성된 27개소 신규 지역은 서울시 지반침하 구역 정밀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이 선정되었음(보조율 20%).

[하수관로 정비 추경예산 편성 내역]

구분	개소	편성액	비고
계속사업	38개소	505억원	집행가능성 및 연부율 고려
신규사업	27개소	51억 4,400만원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보조율 20% 지원

(1) 계속사업 38개소(505억원)

(단위 : 백만원, %)

지자체	세사업명	'25 본예산	증감	추경안	증감률 (%)	실집행률(%)*	
						'24	'25.3
인천시	동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2차)	382	3,156	3,538	826.2	47.4	-
수원시	수원시 차집관로 정비	1,904	1,101	3,005	57.8	100.0	-
양주시	양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777	3,117	3,894	401.2	-	-
의정부시	의정부시 노후 하수관로정비 2차	2,085	915	3,000	43.9	100.0	78.8
부산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3-1단계)	396	604	1,000	152.5	76.0	-
익산시	익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1,453	1,547	3,000	106.5	100.0	-

지자체	세사업명	'25 본예산	증감	추경안	증감률 (%)	실집행률(%)*	
						'24	'25.3
부산시	기장하수처리구역 분류식 관로 정비사업	2,677	2,323	5,000	86.8	100.0	-
임실군	오수공공하수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	671	1,194	1,865	177.9	100.0	100.0
구미시	구미 원평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1,376	624	2,000	45.3	27.5	100.0
광양시	광양읍처리분구하수관로정 비사업	183	493	676	269.4	80.4	32.7
완주군	완주과학산단 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	1,845	1,155	3,000	62.6	88.6	19.0
안성시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	3,141	825	3,966	26.3	-	-
제천시	서부동 및 화산동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305	544	849	178.4	-	-
인천시	23년 중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80	934	1,114	518.9	39.5	-
음성군	음성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727	427	1,154	58.7	77.2	-
구리시	노후하수관로 정비	1,101	1,165	2,266	105.8	-	-
구례군	구례 노후 공공하수관로 보수사업	1,874	1,039	2,913	55.4	100.0	-
연천군	연천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946	2,489	3,435	263.1	100.0	-
완주군	완주군 삼례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20	269	489	122.3	65.3	-
광명시	광명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3단계]	239	1,380	1,619	577.4	44.5	-
화순군	화순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003	1,500	2,503	149.6	100.0	100.0
경산시	동부권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605	1,097	2,702	68.3	100.0	-
문경시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오수) 정비사업(2단계)	506	1,800	2,306	355.7	100.0	-

지자체	세사업명	'25 본예산	증감	추경안	증감률 (%)	실집행률(%)*	
						'24	'25.3
창원시	창원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2,967	2,033	5,000	68.5	-	-
안산시	안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싱크홀 예방) (2단계)	1,493	1,020	2,513	68.3	68.7	32.6
달성군	달성군 다사, 화원, 가창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	458	2,042	2,500	445.9	100.0	100.0
달성군	달성군 옥포, 현풍, 구지 노후관로 정비사업	424	1,486	1,910	350.5	100.0	-
진천군	덕산,이월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753	442	1,195	58.7	-	-
양평군	강하공공하수처리장 노후 오수간선관로정비	31	113	144	364.5	100.0	-
부산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3-2단계)	1,812	985	2,797	54.4	35.5	-
영암군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1,056	944	2,000	89.4	100.0	-
청주시	2단계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443	1,977	3,420	137.0	0.4	1.0
고양시	고양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478	1,736	2,214	363.2	-	-
동두천시	동두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2단계)	246	1,272	1,518	517.1	-	-
인천시	서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긴급)	137	1,131	1,268	825.5	43.0	-
부산시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3-3단계)	1,646	894	2,540	54.3	-	-
성남시	성남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4단계)	346	3,715	4,061	1073.7	11.6	-
용인시	용인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차)	1,723	1,012	2,735	58.7	100.0	-

자료 : 환경부

(2) 신규사업 27개소(51억 4,400만원)

(단위 : 백만원)

No.	시군	세부내역	조사물량 (km)	전체보수 (km)	부분보수 (개소)	총사업비 (국고·지방비)	추경(안)
'21~'23년 지반침하 발생지(①)			136.0	17.66	1,046	34,703	6,941
1	종로구	종로구 혜화동	4.69	1.38	39	2,458	492
2	중구	중구 을지로 1가	5.62	1.62	38	2,833	567
3	중구	중구 남대문로5가	6.63	2.13	21	3,551	710
4	성북구	성북구 성북동	4.51	0.65	31	1,235	247
5	성북구	성북구 장위동	4.28	1.28	22	2,190	438
6	도봉구	도봉구 쌍문동	5.38	1.21	73	2,393	479
7	은평구	은평구 수색동	6.41	1.43	15	2,388	478
8	은평구	은평구 응암동	8.04	1.04	51	1,987	397
9	강동구	강동구 암사동	3.00	0.17	30	455	91
10	강동구	강동구 천호동	4.70	1.10	39	1,997	399
11	송파구	송파구 마천동	4.10	0.67	66	1,476	295
12	송파구	송파구 거여동	4.30	1.07	54	2,046	409
13	송파구	송파구 송파동	5.70	0.24	34	592	118
14	송파구	송파구 가락동	3.00	-	4	24	5
15	송파구	송파구 삼전동	3.40	0.20	29	497	99
16	강남구	강남구 삼성동	7.00	0.84	40	1,592	318
17	강남구	강남구 압구정동	3.00	0.24	33	586	117
18	강남구	강남구 논현동	4.10	0.10	52	407	81
19	강서구	강서구 염창동	5.30	0.27	31	615	123
20	관악구	관악구 봉천동	5.50	0.14	124	968	194
21	양천구	양천구 신월동	0.46	-	8	48	10
22	마포구	마포구 도화동	7.80	0.28	56	786	157
23	서초구	서초구 반포동	5.50	0.15	20	356	71
24	용산구	용산구 도원동	5.70	0.22	60	722	144
25	구로구	구로구 운수동	2.30	0.12	30	369	74
26	영등포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8.70	0.13	21	343	69
27	서대문구	성산로 일대(연희동)	6.88	1.02	25	1,788	358
기보수 완료·보수불가(②)			-	5.29	80	8,981	1,796
합 계(①-②)				12.37	966	25,722	5,144

자료 : 환경부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³²⁾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미 확정된 예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상 요건 외에도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목적적합성·예측불가능성·보충성·시급성·연내집행가능성·한시성 등이 일반적인 요건으로 제시되고 있음.³³⁾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싱크홀(지반침하 또는 땅꺼짐) 현상³⁴⁾에 국민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싱크홀(지반침하 또는 땅꺼짐)의 주된 원인으로 노후 하수관 손상 문제가 지목³⁵⁾된 바, 노후 하수관로 정비·교체를 위한 동 추경 예산안은 지반침하로 인한 싱크홀(지반침

32)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33)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

요건	세부내용
① 목적적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② 예측불가능성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③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④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⑤ 연내집행가능성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⑥ 한시성	향후 일정 기간 지속될 사업 및 신규 사업의 편성을 지양하고 한시적 재정지원 사업 위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34)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지반침하 또는 땅꺼짐)은 2,085개로, 경기(429개), 강원(270개), 서울(216개) 순임.

참고로, 최근 발생한 싱크홀(지반침하 또는 땅꺼짐) 사고는 (2025.3.) 강동구 직경 20m·깊이 20m, 규모, (2024.9.) 부산 사상구 가로 10m·세로 5m·깊이 8m 규모, (2024.8.)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가로 6m·세로 4m·깊이 2.5m 규모임.

35) '19~'24년 기준 지반침하 원인 중 하수관 손상이 46.5%를 차지

하 또는 땅꺼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도로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하수관로의 누수차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특히, 전체 하수관로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하수관로가 전국 기준 44%를 차지하고, 장기간에 걸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특성³⁶⁾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사업을 착수해야 할 시급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하수관로 노후화율 비중]

	'23년 보급률	노후화율(b/a)	연장(a)	20년 이상 노후화(b)
<전 국>	95.4%	44.0%	172,496km	75,837km
▪ 서울	100.0%	66.1%	10,866km	7,181km
▪ 광역시	98.6%	56.2%	35,436km	19,917km
▪ 도	90.8%	38.6%	126,194km	48,738km

자료 : 환경부

다만, 동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추경예산의 취지에 따라 시급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우선하여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음.

환경부에 따르면, 동 추경예산 편성 지역의 기준은 노후하수관로 중 연내 예산 집행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였으나, 싱크홀(지반침하 또는 땅꺼짐) 발생 이력, 하수관로 노후도, 지하공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36)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및 용역 진행 - 낙찰업체 선정 - 공사 착공

분석하여 고위험 지역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에 배정된 27개소의 경우, 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노후 하수관로 조사³⁷⁾ 등에 근거하여 고위험군을 선정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한 바, 환경부 또한 정기적인 지반침하 고위험군 지역 조사 체계 수립이 필요해 보임.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상치 못한 지반침하 현상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예외적으로 편성되는 것이므로, 향후에는 본예산 중심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수관로의 결함 정도 및 개·보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추경예산이 편성된 지역 중 2024년 결산 및 2025년 3월 기준 기존 사업 예산의 실제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사업 지연 방지 노력이 필요해 보임.

계속사업 중 양주시·안성시·제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24년 및 2025년 3월 기준 실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된 38개소 중 17개 지역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임에 따라 추가로 편성된 예산의 이월 및 불용 우려가 있음.

37)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지반침하 특별점검 요청에 따라 2024년 자치구별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을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시에 보고하도록 하였음

[하수관로정비사업 '24 실집행률 50% 미만 지역]

(단위 : 백만원, %)

연번	지자체	세사업명	'25 본예산	증감	추경안	증감률 (%)	실집행률(%)	
							'24	'25.3
1	인천시	동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2차)	382	3,156	3,538	826.2	47.4	-
2	양주시	양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777	3,117	3,894	401.2	-	-
3	구미시	구미 원평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1,376	624	2,000	45.3	27.5	100.0
4	안성시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	3,141	825	3,966	26.3	-	-
5	제천시	서부동 및 화산동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305	544	849	178.4	-	-
6	인천시	23년 중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80	934	1,114	518.9	39.5	-
7	구리시	노후하수관로 정비	1,101	1,165	2,266	105.8	-	-
8	광명시	광명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3단계]	239	1,380	1,619	577.4	44.5	-
9	창원시	창원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2,967	2,033	5,000	68.5	-	-
10	진천군	덕산,이월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753	442	1,195	58.7	-	-
11	부산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3-2단계)	1,812	985	2,797	54.4	35.5	-
12	청주시	2단계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443	1,977	3,420	137.0	0.4	1.0
13	고양시	고양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478	1,736	2,214	363.2	-	-
14	동두천시	동두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2단계)	246	1,272	1,518	517.1	-	-
15	인천시	서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긴급)	137	1,131	1,268	825.5	43.0	-
16	부산시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3-3단계)	1,646	894	2,540	54.3	-	-
17	성남시	성남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4단계)	346	3,715	4,061	1073.7	11.6	-

자료 : 환경부

또한, 신규사업으로 배정된 서울시 27개소 지역 역시 2025년도 예산 기준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도 편성되지 아니한 신규 지역으로, 2025년 4월 현재 기준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도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인바, 추가경정예산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설계·착공, 주민 협의 완료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해 보임.

셋째, 신규사업으로 배정된 서울시 27개소 지역에 대한 보조금 비율은 20%로 설정되었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³⁸⁾ [별표 1]에 따르면 하수관로 정비는 광역시 30%,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60%, 일반 50%의 보조율을 설정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된 국고보조율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임.

서울시는 높은 재정자립도(2024년 기준 약 80%) 및 높은 하수도 보급률(100%)을 감안하여 '08년부터 하수관로 사업에 대해 국고를 지원하지 아니하고 있어³⁹⁾ 보조율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싱크홀 대책('14), 호우피해 예방대책('22) 등 정부 정책상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보조율 설정의 통일성 및 예측 가능성을 위하여 관련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거나

3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39) 참고로, 서울시는 2024년 하수관로정비사업(노후하수관로 정비) 예산으로 자체 예산 225,204백만 원을 편성하여 총 168,264원(74.7%)을 집행하였고, 2025년 예산에는 195,072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지침 등을 통해 문서화 할 필요가 있을 것임.

따라서 환경부는 추가경정예산이 하수관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추가로 편성된 예산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며, 명확한 보조율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